

# 상임이사·지원·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기록물관리규정 등 9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

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

일괄개정 2023. 12. 18. 규정 제495호

제1조(「기록물관리규정」의 개정) 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8호 중 “본원·지원”을 “본원·본부”라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 하며, 별지 제1호서식 중 “지원 문서고”를 “본부 문서고”라 한다.

제2조(「민원처리규정」의 개정) 민원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및 제8호 중 “지원을”을 “본부를”로, 제14조제2항 중 “본·지원”을 “본원·본부”로, 제36조제2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 한다.

제3조(「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」의 개정)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실장(지원장)”을 “실장(본부장)”이라 한다.

제4조(「안전보건관리규정」의 개정)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원 및 지원”을 “본원 및 본부”라 하고, 제9조 본문 중 “각 지원의 경우 지원장”을 “각 본부의 경우 본부장”으로, 제10조제1항 중 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, 제50조제2항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별표 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중 “지원”을 “본부”로, 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, “개발상임이사”를 “보험수가상임이사”로, “업무상임이사”를 “심사평가상임이사”로, 별표 2 사고보고 계통도 중 “<지원>”을 “<본부>”로, “지원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제규정관리규정」의 개정)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제2호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 하고, 제36조제3항 중 "각 부서(지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를 "각 부서(본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6조(「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」의 개정)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본문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16조의2 본문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0조제1항부터 제2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2조제1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4조 본문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5조 본문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 한다.

제7조(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"본원 및 지원"을 "본원 및 본부"로, 같은 조 제9호 중 "본·지원"을 "본원·본부"로, 제4조제2호 중 "지원"을 "본부"로, 제17조제1항 중 "지원"을 "본부"로,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18조제1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28조제2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, 제30조제1항 중 "지원"을 "본부"로, 별지 제5호서식 중 "지원"을 "본부"로, 별지 제9호서식 중 "전주지원"을 "전북본부"로 한다.

제8조(「홍보규정」의 개정) 홍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부터 제6호 중 "지원"을 "본부"로 하고,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 하며, 제12조 제3항 중 "지원장"을 "본부장"으로 한다.

제9조(「기업 규제애로 신고처리와 민원보호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기업 규제애로 신고 처리와 민원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본원 및 지원과"를 "본원 및 본부와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